

## □ 강사수당 편성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지급대상	단가
특별강사	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교육운영상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시간당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1시간 300 초과시간당 200
	2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대학 총장(급), 전·현직 교육감,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 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교육운영상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	1시간 200 초과시간당 150
일반강사	1 대학 전임강사 이상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4급과장(담당관)직위 이상의 공무원, 과장(담당관)이상 직위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유·초·중등학교장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공무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다수인강사 이외의 강사, 교육운영상 기관장이 인정하는 위 지급대상자에 준하는 민간인 외래강사	1시간 160 초과시간당 90
	2 대학 시간강사,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4·5급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외국인(원어민)강사, 교육운영상 기관장이 인정하는 위 지급대상자에 준하는 민간인 외래강사	1시간 90 초과시간당 60
	3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제1, 2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교육운영상 기관장이 인정하는 위 지급대상자에 준하는 민간인 외래강사	1시간 70 초과시간당 40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	시간당 50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전산보조 제외)	시간당 40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30
	다수인(그룹)강사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연극 등 예술활동으로 다수인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	4인, 2시간미만 500 초과시간· 사람당 각 50
기타	분임지도 : 분임지도 및 분임평가 수당	시간당30, 초과20
	원어민(영어)보조교사 : 각종 실기실습보조자에 준함	시간당 40
	원격연수응답(튜터) : 재사용컨텐츠 교과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수당	시간당 30

※ 교통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 교육강사 수당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은 총 수령액(원고료 등 포함)이 동법 시행령 제25조 [별표2]에서 정한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간당 상한액은 관련 법령 참고자료의 '외부강의 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 참조(p52)

※ 관련법령 참고자료

○ 강사료의 지급제한

- 관련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외부강의 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시행령 제25조 별표2]

·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

구 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

구 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 적용기준[시행령 제25조 별표2]

-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직자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직자 등의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단,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바. 기타수당

구분	단위	항목	단가	비고
지도수당 심사수당 심의수당 편집수당 검토수당 평가수당 진행(관리) 요원수당 컨설팅수당 모니터링수당	일당	외래인(교수, 전문가, 교장급)	· 기본료 100,000원 · 초과 30,000원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사립학교 직원 포함) 직접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사무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자기소관 사무는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까지 포함하며,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분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는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봄)
		교장급	· 기본료 60,000원 · 초과 30,000원	
		교감급 이하, 일반인	· 기본료 40,000원 · 초과 30,000원	

## 바. 원고료

항목	구분	단위	단가(원)
원고료	국문 외국어	○1매 - A4 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mm, 좌·우여백 25mm ※ 강의원고일 경우, 시간당 최대 3매 까지 지급 ※ 순수 창작원고 및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원고는 매당 20,000원까지 지급 가능	14,000
슬라이드	자막제거	○1매	10,000
제작료	녹음	○10분(40매)	100,000
파워포인트	일반자료	○시간당(20매 미만 분량) 시간당(20매 이상 분량)	40,000 50,000

※ 항목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항목만 지급 / 원고지는 A4용지로 환산하여 지급